

과실 소견서

1. 사고개요

- 가. 사고일시 및 장소
- 1) 일시 : 0000-00-00-00:00
 - 2) 장소 : 자동차 전용도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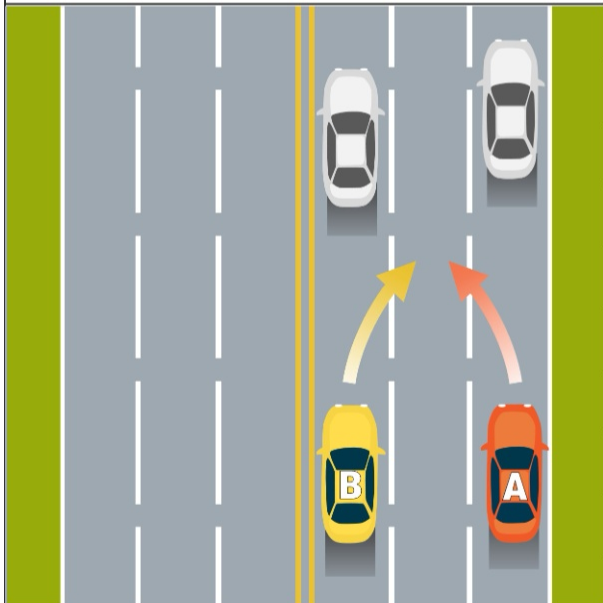
- 나. 사고관련 차량
- 1) 자차 차종 : A차량 세단
 - 2) 대차 차종 : B차량 세단

다. 발생개요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라. 사고 검토 결과

고객님의 사고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차43-3유형으로 판단 되며 A차량에 해당합니다.
과실 비율은 30%로 추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차43-3	좌우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A : (A) 진로변경		B : (B) 진로변경	
수정요소			A	B
	과실비율		30	70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A 전용차로 위반		+10	
	A 정체차로변경		+10	
	A 진로변경 금지장소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정차후 출발		+20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B 전용차로 위반			+10
	B 정체차로변경			+10
	B 진로변경 금지장소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출처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은 법정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제38조] 1항에서는 진로 변경 시 주의사항과 차의 신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때 해당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후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를 이용해 행위 종료 시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 사고 개요

본 사고는 A차량이 전방 정체 차량들로 인해 감속하며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충돌 부위는 A차량 좌측 뒷면(헬다 및 바퀴 추정), B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양 차량이 각각 좌우 방향에서 동일한 4차로를 향해 진로변경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에서 양 차량은 모두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충돌하였습니다. 진로변경 차량은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차량 및 동일 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을 것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진로변경을 진행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진행 시 변경하려는 4차로의 차량 진입 상황 및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A차량은 5차로에서 4차로로, B차량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하면서 각자 변경하려는 차로의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진로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략)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중략)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차량의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는 제공된 자료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 차량의 차로변경 시기가 거의 차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어느 일방이 방향지시등을 사전에 점등하였더라도 상대 차량이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양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는 각 차량의 신호 이행 의무 및 상대 차량의 인지가능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에서 양 차량은 모두 인접 차로에서 동일 차로로 진입하는 상대 차량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양 차량의 시야 여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차량의 경우 차로변경 당시 좌측 사이드미러의 각도상 좌측 후방에서 진입하는 B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B차량 운전자 시점에서는 우측 A필러에 의해 A차량의 일부가 가려져 보일 가능성은 있으나 A차량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시야 여건의 차이는 각 차량의 인지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판단에 있어 상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고 종합 분석

본 사고는 A차량이 전방 정체로 인해 5차로에서 4차로로, B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각각 진로변경을 진행하던 중, 양 차량이 좌우 방향에서 동일한 4차로로 진입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분석됩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에 관한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므로 기본 구조상 양 차량 모두에게 일정 부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 차량의 과실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충돌 부위 측면에서 A차량은 좌측 뒷면(헬다·바퀴), B차량은 우측 앞 범퍼 및 헤드라이트가 충돌하였습니다. 이는 A차량이 B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4차로 방향으로 진입하여 차체의 상당 부분이 진행한 상태에서, 후행하여 진입한 B차량의 전면부가 A차량의 측후면을 충격한 형태와 정합적입니다. 즉 A차량이 진로변경을 어느 정도 선행한 정황을 시사합니다.

둘째, 시야 여건 측면에서 A차량은 좌측 사이드미러의 각도상 좌측 후방에서 접근하는 B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B차량은 우측 A필러에 의한 일부 시야 차폐가 있더라도 A차량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B차량 측에 상대 차량 인지 및 회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A차량이 주행하던 차로가 정체 차로이기는 하나, A차량은 정지해 있다가 차로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접근하던 중 정체를 확인하고 차로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체 차로에서 급작스럽게 진입한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본 사고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대한 안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양 차량 모두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인정되나, 충돌 부위상 A차량이 진로변경을 상대적으로 선행한 정황, B차량의 상대 차량 인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B차량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등 추가 확인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소견은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며, 최종적인 과실 비율의 확정 및 책임 판단은 사법기관 또는 분쟁조정기구의 권한을 부기합니다.

이에, 도표 차43-3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요소 적용 및 분석 소견을 드립니다.

A차량

1. 기본 과실

B차량

1. 현저한 과실 +10

- 전방 주의의무 소홀

2.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 4차로 진입 당시 방향지시등 점등하지 않음

상기 수정요소 및 분석 내역을 종합하여 A차량 30% B차량 70% 과실상계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효과적인 사고 처리를 위해 상호간
완만한 합의를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름 :
자격번호 :

별첨1_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 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본 사건 과실비율 산정 근거자료 ※

- 의뢰 운전자의 사고접수 내역
- 의뢰 운전자에게 제공받은 사고당시 영상 자료
- 의뢰 운전자에게 제공받은 사진 자료
- 사고지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위성지도 및 로드뷰

본 소견서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및 판결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5에 따른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근거하여 각종 교통사고 분석데이터를 토대로 분석된 소견서입니다. 이에, 추가적인 증거자료(CCTV, 당사자 증언, 수사기록 등)에 의해 본 소견서의 결론 및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국적인 가해자/피해자 확정 권한은 사법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